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립식예금 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은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과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제3조 예금의 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년, 2년, 3년중에서 정합니다.

제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입니다.

제6조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분기당 1만원이상 300만원 한도내 적립이 가능합니다.

제7조 자동 재예치

- ① 이 예금은 가입일에 자동 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재예치되며, 최소 가입금액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명의 입출금통장으로 이체됩니다.
- ② 자동 재예치 선택후 재예치 계약기간을 다르게 희망하거나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도래하는 재예치거래시 적용됩니다.
- ③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하고,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 ④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거나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자동재예치를 해제하는 등 기타 재예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8조 이자지급

-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9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월복리로 썬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 ②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가입일(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단리로 썬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를 단리로 썬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제9조 우대금리

- ① 이 예금은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매 계약기간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1.0%의 우대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주거래하나 우대와 주거래플러스 우대는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도해지시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대항목	내 용
주거래하나 우대 (연0.5%)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1/2 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 ^(주) 1종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주거래플러스 우대 (연0.9%)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1/2 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 ^(주) 2종 이상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온라인.재예치 우대 (최대 연0.1%)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주) 주거래실적 중목별 인정기준 :

- 급여 입금 :

-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 연금입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기타연금(연금수급 지정일 전후 1영업일에 건당 20만원이상 대량이체방식으로 입금되고 연금, 보험사명 등의 적요 포함된 자금)

- 하나카드(현대카드) 결제대금(신용/체크), 하나카드(BC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공과금 출금, 아파트관리비 출금, 본인명의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 ②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우대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특별중도해지

영업점 창구를 통해 아래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 본인 결혼, 출산, 주택구입, 자녀 학자금

제11조 일부해지

- ① 일부해지는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매 계약기간동안 2회까지 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에 따라 가능하며, 일부 해지금액에 대하여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 ②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만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부 칙

1.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9년 0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2. 이 특약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
3. 이 특약은 2021년 02월 0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
4. 이 특약은 2021년 10월 05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
5.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5년 07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